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29 |
|----------|----|

2022. 9. 19.(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9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9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두환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민선 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 신설

·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국(안 제8조제8호)

-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안 제12조제10호)
-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체육관광국(안 제12조제11호)
- 이관
 -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국 → 균형건설국(안 제13조제20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보건복지국에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 둘째, 문화체육관광국에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 셋째, 문화체육관광국의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임.
- 민선 8기의 도지사의 주요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민선8기 도정 비전의 조기실현과 조직효율성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1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 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p> <p>1. ~ 9. (생 략)</p> <p><u>1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 업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11. ~ 13. (생 략)</u></p> <p>제13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9. (생 략)</p> <p><u><신 설></u></p> <p><u>20. ~ 24. (생 략)</u></p> | <p>제8조(보건복지국)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u></p> <p><u>9. (현행 제8호와 같음)</u></p> <p>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 -----.</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 업</u></p> <p><u>1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 성·운영</u></p> <p><u>12. ~ 14.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u></p> <p>제13조(균형건설국) ----- -----.</p> <p>1. ~ 19. (현행과 같음)</p> <p><u>2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 업에 관한 사항</u></p> <p><u>21. ~ 25. (현행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u></p>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

○ 첨부제의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도정 비전의 조기 실현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